

암호화폐의 법리와 보험*

정 상 근**

<차례>

- | | |
|------------------------|--------------|
| I. 서론 | IV. 암호화폐와 보험 |
| II. 암호화폐제도의 특성 | V. 결론 |
| III.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과 거래규제 | |

주제어 : 암호화폐, 코인, 블록체인, 핀테크, 법정화폐

<국문초록> 암호화폐는 국가중심의 법정화폐 남용에 대한 반발로 탄생되었다. 탈권위를 특징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그 존재 여부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점에서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폐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반면 법정화폐로부터 끈임 없는 견제를 받고 있다. 또한 규제부족으로 마약대금의 지급 등과 같은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법적 관점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것인가 증권이나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규제방법이 달라 질 수 있다. 방법에 있어서는 은행규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대상에 있어서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기술과 결합하여 거래의 보안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상당하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 이드림의 스마트계약방식을 통해 보험자의 사업조직과 진행을 외주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러한 스마트 계약방식은 생명보험, 레저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분야에서 유용할 것이다.

* 이 논문은 영산대학교 교내 학술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접수일(2018.05.31), 심사개시일(2018.06.19), 게재확정일(2018.06.25)

I. 의의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개인간(P2P) 네트워크 기반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이다. 즉, 발행기관의 통제가 없는 분산구조의 전자화폐로서, 암호화된 화폐이다. 이러한 암호화폐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계층의 운명을 결정하는 글로벌 금융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발전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므로 향후 전개방안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다. 암호화폐는 가격의 급등락, 범죄수단, 거래소 해킹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법정화폐의 견제 속에 궁극에 소멸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중개인을 제거하여 거래의 혁신을 가져올 기술매체로 암호화폐 중 일부는 세계화폐로 기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진단한 후, 특히 코인발행을 통한 보험계약의 간소화문제를 중심으로 암호화폐체제가 향후 보험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II. 암호화폐제도의 특성

1. 암호화폐의 등장과 은행시스템

암호화폐는 소수의 정보지배자가 다수를 지배, 왜곡하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장하였다. 즉, 소수의 금융자본가와 정치가가 경제적 효익을 누리고, 정작 위기 시에는 화폐납발비용을 다수의 경제적 약자가 부담하는 국가중심 화폐체제의 모순을 지양하고자 새로운 차원의 화폐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암호화폐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점에서 분산원장과 암호화폐시스템은 은행시스템을 약화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구글, 알리바바 등과 같은 모바일 업체의 결제서비스 강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핀테크는 블록체인기술과 구별되어야 한다. 개념 상 핀테크가 블록체인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성질 상 양자는 대비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¹⁾

이러한 핀테크의 등장은 전통적인 은행독과점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 기존 금융사업자들은 금융안정의 위협을 근거로 고객계좌에 대한 오픈뱅킹의 도입과 암호화폐의 활성화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단위국가의 규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규제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²⁾ 그러나 은행이 블록체인기술을 수용하고,³⁾ 암호화폐의 다수 이용자가 은행권 거래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양자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⁴⁾

2. 암호화폐의 특성

(1) 투기성, 실용성

암호화폐는 가격의 등락이 심해 투자자산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투기성은 중앙통제기구의 부재라는 암호화폐의 일반적 특성에 일부 원인이 있다. 즉, 투기세력을 적발하거나 과도한 등락을 제한하는 규제장치가 없다는 점 등이 암호화폐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증권규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경우 10-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거래정보를 거래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거래장부인 블록체인의 형식으로 공유하는 특성에서 유래하는 결과인데,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 공유정보의 증가로 거래속도가 더욱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이더리움(ETH), 이오스(EOS)와 같은 새로운 토큰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속도증가를 꾀하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술의 하나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중앙기관이 원장인 블록체인을 관리하는 형식을 취하는 이

1) 예를 들면 국내 핀테크 기업 피노택은 종래 금융거래 및 담보대출기술을 공급하는 등 금융기관의 비대면 거래를 쉽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돕는 기능을 수행해왔지만 최근 리빈(LIVEEVN)이라는 어플을 개발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제공(위치정보 등) 평판합의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독자 암호화폐인 빈(VEEN)을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즉, 핀테크가 B2B형식으로 솔루션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블록체인사업자는 P2P형식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스페인 BBVA은행의 곤잘레스 회장 등은 글로벌 대책기구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2.05.)

3) 은행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리플(Ripple)과 같은 블록체인기술체계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한국경제신문 2018.6.24.

형식은 속도증가에는 유리하나 해킹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코인의 대표적 사례가 리플(Ripple)이다. 구글과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리플은 국제결제서비스를 수행하는 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리플은 익명성을 배제하고, 돈세탁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의 증권법을 고려하여 적법성을 높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방식을 채택하여 거래속도를 개선하고 있어, 금융분야에 특화된 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사용이 가능한 장소를 표시하는 웹사이트로 CoinMap이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9300여개 정도이다. 상점, 호텔, 숙박업소, 레스토랑, 옷가게, 미용실 등에서 비트코인의 이용이 가능하다.⁵⁾ 현재 세계적으로 3,000기 이상의 ATM기가 설치되어 암호화폐를 현지화폐로 용이하게 인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실용성 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2) 익명성과 보안성

이더리움(Ethereum),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암호화폐는 개인간거래(P2P) 형태의 거래로 아무런 흔적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누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암호화폐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 구성원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보험사 고객 1000명이 보험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특정인의 보험정보를 탈취하거나 위조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의 컴퓨터에 자료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위조사실을 금방 알 수 있고, 도리어 위조내용을 자동으로 수정한다. 물론 전체 블록체인 정보를 위변조할 수 있지만, 이때는 동시에 50% 구성원의 정보를 공격하여 수정해야 하므로 블록체인 상 기록정보를 사실상 위·변조 내지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의료분야의 증명사업, 학사증명서사업, 차량등록소사업,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공공분야사업 등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5) Global Economic 2017.09.20.

II.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과 거래규제

1.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

이러한 성질은 이론적 기초위에서 설명할 수 있으나 정책적 견지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현재 암호화폐의 성질은 주로 정책적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1) 증권

미국의 경우, 7월 26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지갑 해킹으로 큰 화제가 된 DAO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한 토큰을 일반 통화를 이용해 매매하는 주식과 동일한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고, 규제권 거도 증권법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미국의 최대 옵션 거래소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비트코인 선물상품을 상장한 바 있다.

(2) 화폐

1)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법정화폐를 양화라면 암호화폐는 악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암호화폐의 가치는 0에 수렴할 수 있다.⁶⁾ 그러나 화폐로서의 가치(평가)는 상대적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다. 법정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잃어갈 때 악화에 대한 수요는 증대한다. 현재 법정화폐의 수요가 압도적이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 더플레 억제제를 위해 돈 찍어내기를 거의 무한대로 하고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펴는 한편 정정이 불안하거나 인플레가 심한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신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가격변동도 크지 않다. 나아가 암호화폐는 적절한 보상을 하고, 실생활의 활용도가 높아져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6) 크리스다넨, 앞의 책, 28면.

< 표 1 >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비교

	특징	법정화폐	전자화폐	암호화폐
1	형태	유체물 (주화, 지폐)	디지털	디지털
2	발행기관	중앙은행	금융기관, 기업 등	기업, 재단
3	적용법규	중앙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현재 없음 (사실상 거래소만 규제)
4	사용처	다수	가맹점	가맹점
5	화폐단위		법정화폐와 동일	독자적 (비트코인 등)
6	교환가치	완전	현금과 1:1 대응	제한적 (수급에 좌우됨)
7	가치변동성	적음	적음	매우 큼 (향후 줄어듦)
8	거래기록주체		발행기관	거래참가자
9	거래기록기술	인쇄	결제인프라	분산원장 (블록체인)

2) 암호화폐의 기능

화폐는 일반적으로 가치(척도)기능, 저축기능, 지급교환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 가치척도기능(내재가치)

① 금태환화폐의 가치

암호화폐의 가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내재가치가 없으므로 투기수단에 불과하고,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고 한다. “화폐는 본래 교환 활동 과정에서 다른 모든 재화 및 서비스와 교환되는 물건이 그 기원”이라며 “자체로 가치가 있는 금, 은이 직접 현물화폐로 쓰이다 편의성을 위해 금이나 은으로 바뀌주는 태환화폐가 출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가치 있는 금은이 이를 보증하므로 이와 연동한 태환화폐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화폐는 금태환에 연동되지 않으므로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떤 물건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내재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화폐로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안재욱, 경희대 교수의 견해)⁷⁾ 이러한 비판은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금태환이 연동되지 않는 현대 화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⁸⁾

② 현대 불태환화폐의 가치

그렇다면 오늘날 금과 연동되지 않는 국가화폐의 정당성(가치)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이러한 불태환 화폐의 내재가치는 발행주체인 중앙은행의 발행권력에 기초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새로이 등장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의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의 달러남발에 대한 불만에 기초하여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권력은 화폐를 발행·관리하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달리 말해 발권력은 중앙권력의 법정화폐 액면가치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가 현재 정당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최근 미국과 일본정부가 취한 양적 완화조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발권력을 남용하여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면 중앙권력의 기초가 없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③ 암호화폐의 내재가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은 구매력을 보증하는 주체도 없다. 이들은 자체적인 내재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나? 암호화폐의 가치는 특정분야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가치가 아닐까? 장부작성의 부담을 덜거나 해킹위험이 없거나 생산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등의 경제적 효익 말이다. 이른바 교환가치는 이러한 내재가치가 시장에서 가격으로 평가된 것이 아닐까?

(나) 교환기능

교환가치는 시장에서 평가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교환가치는 내재가치의 지지를 받지만 최소가치가 있을 때 더욱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것이다. 현

7) 한국경제신문, 2017 5 25.

8) 미 달러는 8000톤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과 아주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위안화의 기축통화를 노리고 있는 중국은 1000톤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14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태환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위안화의 기축통화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 유통되는 비트코인은 1650만개 정도이며, 2140년까지 2100만개를 생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text{교환가치} = \text{내재가치} + \text{회소가치}$$

심지어는 내재가치가 없거나 희박하더라도 회소가치가 있으면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비록 일부 호사가들의 기호를 충족하는데 그치더라도 가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으면 (교환)가치는 성립하는 것이 아닐까? 네덜란드의 톨립사건은 내재가치가 결여된 채 교환가치만 극대화된 사례가 아닐까? 포브스는 전체 비트코인의 25%가 하드 드라이브 분실과 비밀번호 분실, 전자지갑의 오작동, 부주의 등으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 주식의 감자효과와 같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회소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한다.⁹⁾

(다) 저축기능 (미래 교환가치)

법정화폐는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저장수단에 의해 저장이 가능하고, 암호화폐도 사이버 상 저장이 가능하다. 자산이든 코인이든 가격변동성이 있으면 향후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현재보다 미래의 매도를 희망할 수 있다. 향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제도가 정비되면 가치변동은 줄어들 것이다. 즉 거래소 등록인 허가제도, 증권규제 수준의 규제를 하면 가치변동의 폭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국가단위의 법정화폐는 국가권력의 지급보증의 기초 위에서 내재가치가 담보되고 있으므로 가치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 국가가 존속하는 한 가치를 유지할 것이며, 국가경쟁력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규제부족으로 가치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정화폐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며, 이점에서 경제학자들은 암호화폐의 화폐성이 희박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변동성이 큰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양자를 비교한 것에 불과하고, 향후 가격안정이 실현되면 교환가치도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본다.

$$\text{보관가치} = \text{내재가치} + \text{회소가치} + \text{가격변동성(가치상승가능성)}$$

9) 이테일리 2017.09.26.

(3) 상품

일부에서는 암호화폐를 (사이버) 자산으로 표시한다. 암호화폐는 거래소라는 사업자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¹⁰⁾ 호주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¹¹⁾ 프랑스도 최근 암호화폐에 대해 19%의 고정세율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동산(유동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율과 동일하므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입장

한국 2018년 초 법무부가 강력한 규제의 입장을 취한 후 별도의 조치는 없다. 법정화폐성과 증권성을 모두 부인한다. 그렇다면 결국 상품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과세를 한다면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부과방식이 채택될 것이다. 법원도 하급심에서는 암호화폐를 물리적 실체가 없고, 객관적 가치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하다고 보아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본 반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재산’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암호화폐의 규제와 책임보험

(1) 거래소의 위험과 책임보험

암호화폐거래소가 직면하는 위험의 종류에는 해킹, 개인정보유출, 사기 등이 있다. 거래소는 고객의 인적사항과 암호화폐를 취급하므로 고객정보나 사이버자산을 탈취하려는 해킹시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2014년 당시 세계 최대의 거래소였던 일본의 마운틴 콕스¹²⁾가 약 5억 달러(한화 약5660억)를 탈취당했고, 국내의 경우 아피존이 2017년 4월 22일 약 55억 원을 탈취 당한바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러한 사이버공격을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현재 빗썸, 코인원이 현대해상, 흥국생명에 각 60억원, 30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들도 부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¹²⁾ 그러나 사고금액에 비해 부보정도가 적어 투자자를 충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10) 이현정, “가상화폐의 금융법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과학기술법연구 제21집 제3호(2015.10), 326면.

11) Cryptocoins news, 2017.10.24.

12) KNEWS, 2017.10.23.

(2) 거래규제

1) 규제의 필요성

블록체인은 제도운영을 담보하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 내지 규제하는 주체가 없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 조세, 소비자보호, 형사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2) 규제의 종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암호화폐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 규제는 대상행위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 규제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의 의미할 수도 있어 각국은 의미전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 자율규제

금융관련사업을 자율규제로 하기에는 그 폐해가 크므로 규제방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규제비용의 측면에서 저렴하고, 잘 작동되기만 하면 가장 이상적인 규제방식이 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유보적 입장에서 암호화폐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세를 취하므로 자율규제의 형식으로 규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나) 법적 규제

① 형법적 규제

코인과 관련해서는 사기, 가격조작, 자금세탁 등의 형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은 사후규제이므로 코인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효과적이라 할 수 없고, 규제의 마지막수단이라 할 수 있다.

② 금융법적 규제

㉠ 의의

규제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규제가 가장 효과적 수단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금융규제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당히 정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그러므로 금융의 성격이 강한 코인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규제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가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 은행규제

법적 규제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시장과열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은행을 통한 규제가 효과적이다. 우선 자본공급을 통제하기 위해 은행입출금계좌를 규제한다. 이를테면 국내 주요은행은 업비트와 빗썸 등 일부 대형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20여개에 달하는 중소거래업체에 대해 은행계좌를 발급하지 않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¹³⁾

㉡ 자본시장법 상 규제

자본시장법은 6개의 증권형식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바, 암호화폐는 이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코인을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인가? 증권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발행구조, 거래소의 구분 등이 기존 체제와 판이하여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 유사수신행위규제와 유사한 규제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 상 근거를 설정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규제내용이 원금반환을 담보하지 않고 금전을 수수하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다르다. 다만 거래소규제라는 점에서는 직접적인 투자자보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내부자거래

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법에 기초한 규제가 희박하다. 이러한 규제의 공백상태에서 내부자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수준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③ 특별법(特別法)에 의한 독자적 규제

암호화폐는 일종의 사이버증권으로서 법정화폐, 증권과는 다른 특징을 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규제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별도의 법으

13) 이는 정부가 은행을 압박하여 내 놓은 규제방안의 하나이다.(NEWS1 2018.1.26)

로 규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별도의 법제정은 새로운 개념을 기초로 하는 점에서 입법 상 부담이 상당하다. 전문적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부서를 과기부, 금융위, 산업부 중 어디로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규제 내용에는 개인정보보호, 자산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 중개업자의 자기거래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④ 업법에 의한 규제

사실 코인가격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규제공백을 초래한 정부의 규제태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가상계좌개설을 방임하는 입장을 취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공백을 이용하여 부실한 설비, 공매도 허용, 별집계좌의 개설과 이를 이용한 가격조작(의 혐의) 등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한 거래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도 일차적으로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가칭, 암호화폐업법(暗號貨幣業法)과 같은 사업자규제법의 제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⑤ 소비자보호법적 규제

코인투자자는 투자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소비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암호화폐거래는 금융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코인투자자는 금융소비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거래가 “생활에 필요한 소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도리어 투자자에 해당하므로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소비자기본법 상 안전의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피해보상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¹⁴⁾ 따라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없다.

14) 이은영 편, 소비자법, 박영사, 290-294면.

Ⅲ. 암호화폐와 보험

1. 블록체인과 보험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자는 보험상품의 개발, 고객발굴, 계약유지, 사고조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도 동일하다. 영리보험은 물론이고 비영리공제조합의 경우도 공제료 징수, 사고조사, 공제금지급과 같은 조합사무의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러한 사무처리비용은 스마트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기술(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을 통해 회사 외부에 저가로 외주화(아웃소싱)할 수 있다. 1000명의 조합원이 어플리케이션으로 60만 원씩 코인으로 공제료를 납부하고, 사무처리는 챗봇(대화로봇)이 수행하고, 프로토콜에 내재된 프로그래밍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자동적으로 코인으로 공제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생략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즉, 블록체인과 코인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방식이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코인보험의 등장

코인보험은 보험사업을 블록체인기술과 코인발행을 통해 종래 방식과 다르게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거 보험자의 운영방식은 정보와 의사결정이 중앙으로 집중화된 중앙화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운영방식은 일방향 거래, 수동적인 업무수행, 다수인력의 투입 이 필요한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은 운영비용을 증가시키고, 평균화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수요자 개인에 특화된 상품의 제공·인수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테면 생명보험자가 고객의 건강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독자적인 플랫폼(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20-30억 원의 설치비용이 드는데,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 당 700원의 비용으로 충분하다는 점이다.¹⁵⁾ 이러한 외주화(아웃소싱)를 통한 비용절감방안은 생명보험, 레저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15) INSUREUM whitepaper, p.13.

3. 코인보험개발자와 보험코인의 종류

이러한 보험코인에는 현재 BITRUST, INSURIUM(ISR) 등이 있다. 국내 스타트업인 직토(Zikto)가 추진하는 인슈리움(Insureum)은 보험의 Insurance와 이더리움의 Ethereum을 결합한 합성어로 프로토콜에 사용하는 코인의 명칭을 말한다.¹⁶⁾ 직토는 2018년 3월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여 세계 최초로 보행을 교정하는 스마트밴드를 제작하고, 이때 얻은 헬스케어정보를 활용하여 ‘더 챌린지’라는 통합플랫폼을 제작한 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¹⁷⁾

4. 보험 ICO와 사기

보험코인도 암호화폐공개(ICO)가 필요하다. 암호화폐공개(ICO)는 공개형 블록체인과 함께 짝을 이루는 때에만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블록체인기술을 말하는 것은 무리이다. 암호화폐공개(ICO)는 때때로 프리세일, 좁은 의미의 암호화폐공개(ICO), 상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표 2> ICO와 IPO의 비교¹⁸⁾

		IPO (Initial Public Offering)	ICO (Initial Coin Offering)
1	취득대상	주식(Security)	코인(Coin)
2	취득대상의 성질	지분증권 (Equity)	지분코인 (Coin) 디지털 증서
3	지분보유의 대가	신주 (New Stock)	다른 성질의 계열코인 (Other sort of coin)
4	자본조달규모 (2017년)	37조	4-5조
5	활동영역	국내 (국내에서 자본조달과 거래가 이루어짐)	국제 (자본조달과 거래는 세계적으로 이루어짐)

16) 코인은 암호화폐라기 보다 투자지분자나 서비스사용자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초기 암호화폐로 풀이할 수 있다.

17) 직토社は 2017년 10월부터 인슈어리움 프로토콜 ICO를 진행해 왔고 35억 원 (320만 달러) 상당의 자본금을 확보한 바 있다.

18) 지난 해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규모는 37억 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액인 155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뉴욕증시 IPO 규모(356억 달러)의 10%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IPO (Initial Public Offering)	ICO (Initial Coin Offering)
6	주된 자금제공자	벤처캐피탈 VC	개인, Cloudfund
7	중개기관	주간사회사 Lead Manager	없음
8	금융조달비용	높음	없음

보험코인의 ICO를 하는데 있어서도 사기 ICO의 위험이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ICO의 경우 18.6%가 사기이고¹⁹⁾ 95% 정도가 사기적이라고 한다.²⁰⁾ 사기 ICO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를 받거나 관련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인슈리움(Insureum)이라는 프로토콜로 ICO를 진행하는 직토의 경우 2018년 5월 9일 벤처캐피탈인 더웰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KB금융그룹,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SK플래닛, 코인플러그 등 보험 및 금융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함으로써 ICO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직토는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한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사업계획서인 백서(White Paper)에 따라 운영에 10%, 전략적 파트너십에 20%, 마케팅에 15%, 기술개발에 15%, 비축분에 30%를 각각 배정할 예정이다.

5. 코인보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1) 보험자

보험자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잠재적 보험계약자인 고객에 대해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인수심사나 보험금지급과 같은 사내 업무 절차(벨류체인(Value Chain))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코인규약(프로토콜)을 통해 건강데이터 등을 제공한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개인적 수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데이터제공에 대한

19) 세계일보 2018.5.26.

20) 한국경제신문 2018.6.24.

대가로 관련 코인(암호화폐)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¹⁾

(3) 기타 거래참여자(제3자)

이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아웃소싱을 통해 보험자의 벨류체인(가치사슬)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비용부담을 절감하는데 기여한다.

1) 보험데이터 제공자(개발자)

고객정보를 확보한 코인개발자는 코인프로토콜을 통해 이를 보험자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토큰)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Zikto와 같이 리투아니아의 림포(Lympo)도 IT 전문가들이 창업한 운동 데이터 블록체인 기업이다. 이들은 사용자들이 운동을 하며 쌓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필요한 기업(생명보험회사, 연구기관 등)에 공개하고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는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 건강데이터 제공자

3) 보험서비스 제공자

보험관련서비스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보험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사물인터넷 개발자

보험데이터나 건강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보험자에게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거래플랫폼 제공자

보험비교사이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1) INSUREUM whitepaper, p.11.

6. 코인보험의 한계

(1) 보험보상의 문제

현재 소급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담보는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개시되는데, 코인의 전송속도는 매우 느려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보상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보상은 보험료가 보험자에 도달한 이후에만 개시된다고 할 것인데, 보험료를 지급하는 코인의 미도달로 보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드리움과 같은 코인의 경우 속도문제를 해결하여 전송에 2분 정도 소요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²²⁾ 그러나 속도가 느린 비트코인의 경우 20분- 2일 정도 소요되고, 특히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지 않으면 송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지 않아 전송시간의 단축과 비용절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 보험금지급과 지연이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자는 일정기한 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기한이 도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지급기한의 도과문제는 코인의 전송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자는 재보험에 부보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코인전송에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가격의 급락으로 보험금수령자의 손실이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3) 초과보험

코인가치의 급격한 변동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즉, 보험금으로 지급한 코인의 가치가 전송 중 변동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 그 가액이 전송 당시의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미지급보험금 지급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사무의 부담이 제고되며, 반대로 코인가치의 상승으로 그 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의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22) 비용은 회당 15,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4) 보험데이터의 이용

현재 손해사정 시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블록체인을 통한 데이터 제공만이 비용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VI. 결어

1

암호화폐는 국가권력이 보유하던 법정화폐의 남용에 대한 반발로 탄생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 견해와 긍정적 견해가 공존한다. 즉, 국가는 암호화폐를 극렬 반대할 것인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양극단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2

암호화폐는 과도한 사행성, 마약대금의 지급 등과 같은 불법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계화폐로 성장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상당하다.

3

법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는 은행비밀법(BSA) 상 금융범죄단속기구(FinCEN)에 의한 자금세탁방지에 의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주 차원에서는 법정통화의 반대방향으로 코인이라는 대가가 지급되므로 송금업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먼저 사업법을 제정하고, 뒤이어 금융관련규정을 정비하거나 독자적인 코인법을 현행 금융법수준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4

우리가 새로운 사업분야를 정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면 국경의 제약 없이 글로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인상장제도(ICO)를 인정하지 않아 외국에서 개발된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유력 코인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5

현재 국내 보험코인개발자 직토는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INSUREUM이라는 보험코인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INSUREUM은 스마트계약방식을 통해 보험자의 사업조직과 진행을 외주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스마트 계약방식은 생명보험, 레저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분야에서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진, 켄스마일 주식투자법, 김영사, 2011.
- 김난도 외, 트렌드코리아 2016, 미래의 창, 2016.
- 김장섭(조던), 4차산업혁명시대 투자의 미래, 트러스트북스, 2017.
- 김진화, 비트코인 돈의 판도를 바꿀 디지털화폐의 출현, 부키, 2017.
- 닛케이 BP사 (이정환 역), 세상을 바꿀 테크놀로지 100, 나무생각, 2017.
- 안드레이아스M, 안토노플러스, 비트코인, 고려대출판문화원, 2017.
- 이시즈마간지 지음, 이해란 옮김, 비트코인이 금화가 된다, 국립증권경제연구소, 2017.10.
- 이은영 편저, 소비자법, 박영사, 2014.
- 이종만, 데이터베이스, 연두에디션, 2017.
- 이종태, 완벽한 기술위의 불완전한 화폐, 시사HN, 2018.1.30.
- 이필규·최병규·김은경, 독일보험계약법, 세창출판사, 2009.
- 이현정, “암호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과학기술법연구 제21집 제3호, 2015.
- 장덕조, 보험법, 법문사(제3판), 2016.
- 정재윤, 4차산업혁명재테크의 미래, 다산, 2017.09.
- 크리스다넨(임지순 역), 이더리움과 솔리디티 입문, 위키북스, 2018.
- 토드 부크홀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2009.
- Blockheads.co, “5 Ways Blockchain Will Disrupt Finance”, 2017 Jan 19.
- Global Economic.
- INSUREUM whitepaper.

<Abstract>

The Legal Doctrine of Cryptocurrency and Insurance

Jeong, Sang Keun*

Cryptocurrency such as bitcoin is an person-to-person network based electronic transaction system. This is a new concept of monetary system in that transactions are made without the control of the issuing countries.

Cryptocurrencies, therefore, has a favorable technical characteristic for realizing decentralization. Cryptocurrencies can function as an alternative currency when the value of existing legal currency being fluctuated or excessive taxation on them being a problem. In other words, the dominance of the state currency held by the state power does not apply to the cryptocurrencies, so the cryptocurrencies can develop independently. This serves to weaken the monetary system of an unit country.

In this regard, the state can take various positions. Whether to oppose it, to accept it in a limited way, or to absolutely agree with it. I think it is unreasonable to take the extremes. From a legal point of view, in other to regulate the illegal activities of exchanges, it may be necessary to enact business regulate act, later to make an indefendant coin act.

If we set up a new business area and an efficiency improvement plan using blockchain technology, we can aly the groundwork for global business without border restrictions. Currently, domestic insurance stat-up, Zikto establish an Ethereum blockchain network, Insureum. it can realize innovations in the insurance industry by outsourcing the insurer's business organization through smart contracts.

Key Words : blockchain, cryptocurrency, coin, legal currency, cyber money, IPO

* Professor in the Law Faculty of Youngsan University